

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
번 호

328

제출연월일 : 2019년 11월 27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5, 제39조의19에 의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'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 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'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,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,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
※ 사무실 및 쉼터 수탁기관 제공
- 위탁기간 : '20. 3. 1. ~ '24. 12. 31.(4년 10개월)
- 수탁기관 :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(지부 포함)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사업비
 - 노인보호전문기관 : 670,944천원(국비50%, 도비50%) ※ 기관당 335,472천원
 -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88,236천원(국비50%, 도비50%)
- 위탁 주요사무

| 노인보호전문기관 |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· 현장조사학대피해노인 및 학대자 상담노인학대예방교육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치유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그 밖에 쉼터입소 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|

3. 참고사항

가. 現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현황

□ 노인보호전문기관

| 구 분 |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|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재지 |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-17 | 충주시 예성로 76 |
| 지정일 | 2004. 8. 24 | 2008. 10. 1 |
| 기관장 | 최경묵('65. 9. 10.) | 배선희('70. 8. 19.) |
| 지원액 | · 388,172천원 ※ 지원 유형 : "가"형(인건비10명) | · 306,452천원 ※ 지원 유형 : "다"형(인건비8명) |
| 관 할 | · 중남부권 6개 시군 (청주, 보은, 옥천, 영동, 증평, 진천) | · 북부권 5개 시군 (충주, 제천, 괴산, 음성, 단양) |
| 운영법인 |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| |

□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

| 소재지 | 입주형태 | 면적 | 임차료 | 지원액 | 종사자 | 운영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청주시 청원구 | 무료임차 (법인소유) | 84.07m ² (방3) | 무상 | 185,412천원 |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| '11.4월 |

※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(기관장, 사회복지사 1명 겸직)

나. 관계법령 : 별첨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,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노인복지법」 제35조의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,
제39조의19(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설치)
-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의7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),
제20조의14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)
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9조의1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절차),
제29조의22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

-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-

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(안)



충청북도
노인장애인과

-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-

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(안)

충청북도·충청북도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충청북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선정·운영계획입니다.

I. 관련규정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, 제39조의19(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설치)
-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의7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), 제20조의14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) 등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,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II. 위탁개요

① 위탁대상시설

| 구 분 |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|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|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위 치 | 청주시 | 충주시 | 운영을 희망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재지 |
| 시설규모 | 수탁법인이 사무실, 프로그램운영실 확보 ※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) | | 수탁법인이 쉼터 확보 ※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(쉼터의 설치기준 등) |
| 지원유형 | “다”형(종사자 8명) | “다”형(종사자 8명) | 종사자 4명 |
| 사 업 비 | 335,472천원 | 335,472천원 | 188,236천원 |
| 관할구역 | 중남부권 5개 시군 (청주, 증평, 보은, 옥천, 영동) | 북부권 6개 시군 (충주, 제천, 진천, 괴산, 음성, 단양) | 11개 시군 |

※ 사업비는 2020년도 총예산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(연도별 변동)

② 위탁기간 : '20. 3. 1. ~ '24. 12. 31.(4년 10개월)

③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④ 신청자격

- 접수일 현재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(지부 포함)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-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내지 해지 처분을 받거나 법인 또는 대표자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은 제외
※ 수탁 선정 후 발견 시에는 수탁 선정을 무효로 함

⑤ 위탁사무

- 노인보호전문기관
 -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, 의심사례 현장조사
 -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
 -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
 -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
 -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
 -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
 -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
 -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
 -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
 -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 - 학대로 인한 신체적,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
 -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
 -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III. 세부 추진계획

[1] 위탁 운영조건

○ 위탁조건

- 법령·조례·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
- 사업 공간 확보 및 임대운영 시 임대보증금 수탁자 부담
-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승계
-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
※ 보조금 이외의 추가 필요예산 자부담
-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부담

○ 위탁의 취소

-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 사용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
-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
- 수탁자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
- 기타 수탁자이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

[2] 신청에 관한 사항

○ 공고방법 : 도 홈페이지 공고

○ 공고기간 : '20. 1. 2. ~ 1. 21./ 20일간 ※ 재공고 1. 29. ~ 2. 7./ 10일간

○ 접수기간 : '20. 1. 22. ~ 2. 23./ 2일간 ※ 재접수 2. 10. ~ 2. 11./ 2일간

○ 접수방법 : 근무시간(09:00~18:00) 내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
○ 신청서류

- 1)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1부.
- 2) 법인정관 1부.
- 3)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1부.
- 4)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.
- 5)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.
- 6)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.
- 7)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1부(자격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)

- 8)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.
- 9) 기타 수탁자의 위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

[3] 수탁자 선정방법

- 개최시기 : '20. 2. 21.(금)
- 심의위원회 구성 ※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자동해산
 - 근 거 :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
 - 구성인원 : 6명(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, 사회복지 전문가 5)
 - 자격요건
 -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-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
 -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 -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 -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
- 심사항목
 - 1) 재정적 능력(20점) : 법인의 자산보유현황, 부채현황 등
 - 2) 공신력(20점) : 법인의 설립목적, 업무관련성, 노인복지 업무실적 등
 - 3) 사업수행능력(40점) : 사업계획의 적합성, 재정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
 - 4)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(20점) : 유관기관과의 협력구축 등

※ 신청법인의 기관운영 예산 관련 자부담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
- 선정방법
 -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 각자의 항목별 점수부여
 -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별 배점결과, 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
 - 1개 법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추가공모(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하였을 때 심의)
- 단, 추가공모에도 1개 법인만이 신청할 경우 그 법인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, 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위원회에서 전부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공모
 - 선정기관이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선정

④ 협약체결 및 공증

- 체결 시기 : '20. 2월 말까지
- 내용 :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, 업무 인계 · 인수

IV.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9. 12월
-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: '20. 1월
-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: '20. 2월
- 수탁자 선정결과 발표(도 홈페이지) : '20. 2월
- 협약 체결 및 공증 : '20. 2월

붙임

관련지침 및 조례 발췌

□ 노인복지법

제39조의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·보호·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둔다. <개정 2015. 12. 29.>

1.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
 2.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
 3.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
 4.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
 5.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
 6.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
 7.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
 8.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
 9.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,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6. 7.]

제39조의19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(이하 이 조에서 "학대피해노인"이라 한다)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(이하 "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
2.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3.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,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
4.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

5.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쉼터의 설치기준·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·이용 대상,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3. 14.]

□ 노인복지법 시행령

제20조의7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) ① 법 제39조의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(이하 "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(이하 "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5.>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,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위탁기관의 지정,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 12. 8.]

[제20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20조의7은 제20조의8로 이동 <2018. 4. 24.>]

제20조의14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39조의19 제3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이

경우 시 ·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,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, 소재지,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 · 도지사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9. 5.]

[제20조의13에서 이동 <2018. 4. 24.>]

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29조의1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법 제39조의5 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(이하 "노인보호전문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, 지정기간,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<개정 2008. 2. 29., 2008. 3. 3., 2010. 3. 19., 2011. 12. 8.>

② 법 제39조의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<개정 2008. 1. 28., 2008. 2. 29., 2008. 3. 3., 2010. 3. 19., 2010. 4. 26., 2011. 12. 8., 2015. 1. 16., 2019. 7. 5.>

1.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
 2.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
 3.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
 4. 삭제 <2015. 1. 16.>
 5.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(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고,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)
 6. 삭제 <2019. 7. 5.>
-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

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. <신설 2019. 7. 5.>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[별지 제20호의14서식](#)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08. 1. 28., 2008. 2. 29., 2008. 3. 3., 2010. 3. 19., 2010. 4. 26., 2011. 12. 8., 2019. 7. 5.>

⑤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, 사업계획,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[별지 제20호의15서식](#)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8. 1. 28., 2008. 2. 29., 2008. 3. 3., 2010. 3. 19., 2010. 4. 26., 2019. 7. 5.>

1.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)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

2.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)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

3.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)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

[본조신설 2004. 8. 7.] [제29조의6에서 이동 <2010. 4. 26.>]

제29조의22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) ① 시·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 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(이하 "쉼터"라 한다)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위탁받을 기관의 수

2. 위탁 기간

3. 위탁 신청 절차

4.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영 제20조의13 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2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

2.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

3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
4.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(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한다)

5.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

③ 시·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쉼터의 장, 사업계획,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3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: 변경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
2.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: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
3.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 변경의 경우: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[본조신설 2017. 9. 15.]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 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11. 5.>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>

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>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4. 9. 6.]

[제22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2. 8. 3.>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[법 제34조 제5항](#)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[제21조 제2항](#)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[제23조에서 이동 <2012. 8. 3.>]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